협회 홈페이지 게시용

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

<'19.3.18, 고용노동부>

1 공통사항

○ 보통사다리(일자형 사다리), 신축형 사다리,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(A형)는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

○ **모든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 착용**

2 발붙임 사다리(A형, 조경용)

① **평탄·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**에 설치

② 경작업*, 고소작업대·비계등 설치가 어려운 **협소한 장소**에서 사용

*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, 전기·통신 작업,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

③ 사다리 작업높이가 **1.2m 이상~2m 미만**인 경우

- 2인 1조 작업, **최상부 발판에서는 작업금지**

④ 사다리 작업높이가 **2m 이상~3.5m 이하**인 경우

- 2인 1조 작업 및 **안전대 착용, 최상부 및 그 하단 디딤대** 작업 금지

⑤ 사다리 최대길이가 **3.5m 초과**한 경우 : **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**

3 행정사항

○ **(시행시기)** 즉시

○ **(조치기준)** ①보통 사다리(일자형), 신축형 사다리 등을 **작업발판으로 사용**, ②발붙임 사다리(A형, 조경용) 안전작업지침 미준수, ③모든 사다리에서 **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**시에는

- **「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」에 따라 조치** (**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**, '19.7.1부터 조치)

산재 사고사망 절반으로 줄입시다!

안전은 권리입니다

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이것만은 꼭 준수하세요!

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에 한하여

- 경작업, 고소작업대·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

  * 경작업 :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, 전기통신 작업, 평탄한 곳의 조경 작업 등



평탄·견고한 바닥에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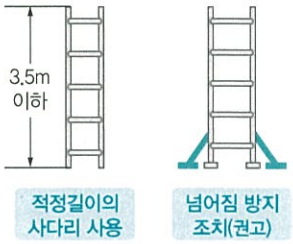
- 평탄·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



3.5m 이하의 A형 사다리를 사용하여

- 최대길이 3.5m 이하 A형 사다리(조경용 포함)에서만 작업

  * 보통사다리(일자형), 신축형(연장형)사다리,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(A형)에서는 작업 금지



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

-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,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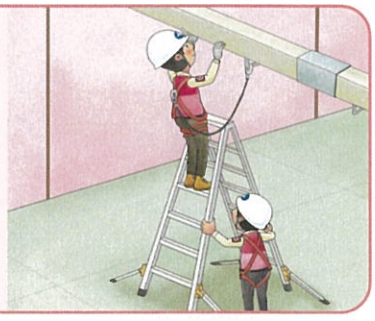
  * 작업높이 : 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



2인 1조로 작업하세요!

작업높이가 바닥 면으로부터

- 1.2m 이상 ~2m 미만 : 2인 1조 작업,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 금지
- 2m 이상 ~ 3.5m 이하 : 2인 1조 작업,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



※ 본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→ **안전보건자료실**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

고용노동부
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

2019-교육홍보-000

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

보통(일자형) 사다리



신축형(연장형) 사다리



(일자형으로 펼쳐지는) 발붙임 겸용 사다리(A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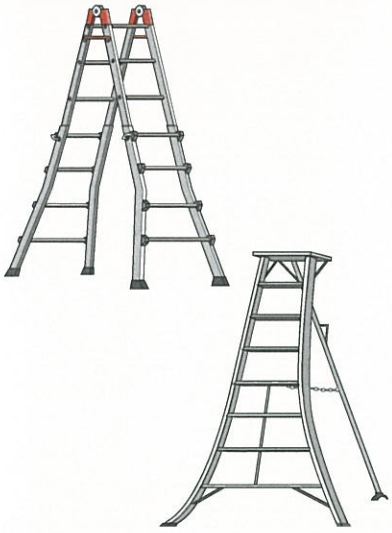


안전작업 지침

- 오르내리는 **이동통로로만 사용**(발판 및 디딤대에서 작업금지)
- 반드시 안전모 착용

※ 사다리 구조 등 그외 안전보건조치는 「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」 준수

발붙임 사다리(A형, 조경용)



작업 높이 (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)	안전작업 지침
1.2m 미만	○ 반드시 안전모 착용
1.2m 이상 ~ 2m 미만	○ 반드시 안전모 착용 ○ 2인 1조 작업 ○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
2m 이상 ~ 3.5m 이하	○ 반드시 안전모 착용 ○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○ 최상부 발판 + 그 하단 디딤대 작업금지
3.5m 초과	○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

공통사항

- 평탄·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
- 경작업*, 고소작업대·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

*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, 전기·통신 작업,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

※ 사다리 구조 등 그외 안전보건조치는 「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」 준수

고용노동부
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